

사전 검토사항

해당항목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토여부	비고
추진근거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법령 <input type="checkbox"/> 방침 <input type="checkbox"/> 별도규정 없음 (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)	
사업추진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존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일회성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(년)	
예산확보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 확보 필요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확보 완료 <input type="checkbox"/> 비예산 사업	예산팀조 ()
이해관계인유무	○ 주민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○ 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타자원활용가능성	○ 중앙부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서울시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민간단체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○ 기업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홍보필요성	○ 홍보대상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지역언론사 등을 통한 주민홍보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○ 보도자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홍보물심사 협조 ()

- 2015년 풍수해 대비 -

장기방치 노후간판 특별정비 추진계획

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 되어 있는 노후간판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강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I 추진근거

☐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10조(위반자에 대한 조치)

II 사업개요

- ☐ 사업대상 : 장기방치 주인 없는 노후·불법 간판
- ☐ 사업기간 : 2015. 6 ~ 8월
- ☐ 예산액 : 18,000천원(구비)
- ☐ 사업방법 : 철거 신청 사전 접수 및 일제 철거

III 세부추진계획

- ☐ 정비대상 신청·접수 : 2015. 6. 17. ~ 7. 14.
 - 정비대상
 -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간판
 - 영업주가 변경되었음에도 부착되어 있는 전 업주의 간판
 - 도로변에 방치된 불법 간판 등
 - 신청·접수 : 철거 동의서 확보
 - 건물주의 자선신고·접수(홈페이지 및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)
 - 조사반 조사(공공근로자 활용, 담당공무원 순찰시 확보)
 - 동주민센터 접수(각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)

■ **현장 확인 및 대상 확정 : 2015. 7. 15 ~ 7. 16.**

- 현장 확인 : 도시미관개선팀장 외 4인 조사반 편성
- 대상 확정 : 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파손 간판 우선 정비

■ **용역 발주 및 정비 실시 : 2015. 7. 17 ~ 8. 05.**

- 용역 발주 :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업체 수의계약
- 정비 실시 : 작업지시 → 철거작업 → 작업보고

IV 기대 효과

- 불량간판 정비로 도시미관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
- 강풍 또는 노후로 추락 등의 위험이 상존한 간판 정비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
- 건물주 비용 부담없이 정비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만족도 향상

V 행정 사항

- 홈페이지 및 지역언론 홍보 : 홍보전산과
- 각 직능단체 홍보 및 신고 접수 : 동주민센터
- 정비 후 공부 정리 등 사후관리 : 도시계획과

따로붙임 : 1. 철거대상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신고서
2.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동의서